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6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3. 정해숙 의원 외 8명 발의(의안번호379호)
- 나. 회부일자: 2021. 8. 26.
- 다. 상정일자: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9. 9.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 가. 제안이유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수정하여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의원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탈북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포함 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 확장(안 제2조, 안 제5조)

구분 용어	기존	개정(안) (제2조, 제5조)
어린이의회 (참여대상)	초등학교 5~6학년생	만11세~12세 또는 초등학교 5~6학년 미취학·다문화·탈북 어린이 등
청소년의회 (참여대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만13세~만18세 청소년이거나, 중학교1학년~고등학교3학년, 미취학·다문화·탈북 청소년 등

## ○ 의원의 정수 조정 (안 제3조)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4조)
의원정수	어린이·청소년 의원 각각 55명 이내	어린이·청소년 의원 각각 30명 내외

## ○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체적인 기능 신설 (안 제3조제2항)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3조제2항)
의회기능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모의회의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 의장단 구성과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8조)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8조)
의장단 선출방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 부의장은 의장선거 후 동일한 방법

○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전체회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함. (안 제8조)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9조)
상임위원회 명칭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의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함.

○ 어린이·청소년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실질적 지원방안 추가  
(안 제12조)

구분 용어 등	기존	개정(안) (제12조)
의원에 대한 지원	- 배지 등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u>의원들이 의회 운영방식·안전제안·안전이 주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교육</u> - 배지 등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과 현행 조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참여대상에 있어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것을 미취학 학생이나 다문화·탈북 청소년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장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단순히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모의회의를 체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정책·예산과 관련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입법과 관련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참여권을 확보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정된 몇 개의 상임위원회 중 희망하는 1곳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스스로 현안사항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롭게 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였음.

○ 무엇보다도, 의회의 운영방식과 안전이 주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명시하여, 향후 어린이·청소년의회가 형식적인 운영을 벗어나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